

예산총칙

2014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27,193,751	9,815,813
일반회계	298,874,264	8,966,228
특별회계	28,319,487	849,585
기타특별회계	28,319,487	849,585
상수도사업	1,554,333	46,630
하수도사업	1,090,000	32,700
수질개선	5,194,572	155,837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34,756	13,043
의료급여기금	553,033	16,591
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	612,000	18,360
소득특화사업	5,388,328	161,650
농공단지조성사업	267,800	8,034
공영개발사업	2,148,385	64,452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	11,076,280	332,288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조서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사업조서 : "해당없음"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421,757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
3. 재해대책 및 복구비